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 문정복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68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총괄적검토	4
(1)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4
(2) 제정안의 구성	5
2.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4조)	6
3. 사학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안 제6조)	10
4. 재정진단의 실시(안 제7조)	12
5.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안 제8조)	14
6. 구조개선 조치 등(안 제9조, 제 10조)	16
7. 자율 개선 및 경영자문(안 제11조, 제12조)	22
8. 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특례(안 제13조부터 제15조, 제17조)	24

8-1.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안 제17조)	30
9. 폐교·해산의 절차(안 제16조)	34
10. 재학생 및 교직원 보호(안 제18조)	36
11. 청산인 등(안 제19조)	39
12.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등(안 제21조)	42
13. 과태료(안 제22조)	44
※ 참고자료 : 경영위기 대학에 대한 특례 관련 기존의 법령	4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문정복 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8.
3. 회부연월일 : 2024. 8.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령인구 감소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등록금 동결 조치 속에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사립대학의 재정위기는 교직원 임금 동결, 연구여건 저하 등으로 이어져 직접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의 원인이 되며, 결과적으로는 학교법인의 파산 및 사립대학의 폐교를 초래하게 됨.

특히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 문제는 비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에서 더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 사립대학의 폐교는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에 대한 피해를 넘어 지역의 연구역량 저하 및 주민의 경제적 피해까지 그 여파가 미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학교법인·사립대학의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학 구성원을 보호하고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안 제4조)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안 제6조)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사립대학·학교법인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재정진단(안 제7조)

전담기관이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경영위기대학의 지정(안 제8조)

재정진단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바. 구조개선 조치 등(안 제9조)

경영위기대학에 대하여 재무구조 개선, 학부·학과 통·폐합, 사립대학 통·폐합 및 폐교·해산 등의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안 제13조~제15조)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영위기대학에 대하여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시설 기준, 정원 등에 있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 폐교·해산과 특례(안 제16조 및 제17조)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른 폐교와 자진 폐교(폐지) 및 해산의 절차와 잔여재산 귀속과 해산장려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자.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안 제18조)

폐교되는 사립대학의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와 교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등 보호조치를 규정함.

차.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의 지정(안 제21조)

폐교대학 주변 지역 경제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경영자문, 고용안정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타. 벌칙 등(안 제23조와 제24조)

과태료와 구조개선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Ⅲ. 검토의견

1. 총괄적검토

(1)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안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립대학구조개선 전담기관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지정하며, 재정진단 실시,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조치, 경영자문 등 구조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그러한 조치를 위한 특례를 규정함.

지난 20여 년간 폐교된 대학은 총 19개교이고, 2018년 이후 폐교된 대학은 그 중 7개교로서 최근 들어 폐교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학령인구가 급감함¹⁾에 따라 사학의 재정난이 악화되고, 한계사학 증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

또한 지역대학이 폐교될 경우 지역사회와 대학 구성원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사립대학들의 재정난 문제는 단순히 대학만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님.

이에 제정안은 현재 재정위기에 놓인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1) 20~24세 인구가 '40년까지 50%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 ('23년 291만 → '40년 188만, 통계청)

(2) 제정안의 구성

제정안은 본칙 24개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됨.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본칙(24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정의)	
제2장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제4조(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재정진단 및 구조개선 조치	
제7조(재정진단의 실시)	제10조(구조개선 조치의 이행실적 보고 등)
제8조(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	제11조(자율 개선의 권고)
제9조(구조개선 조치 등)	
제4장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지원 및 특례	
제12조(경영자문)	제14조(재산 처분의 특례 등)
제13조(적립금 사용의 특례)	제15조(사립대학의 통·폐합 지원을 위한 특례)
제5장 폐교 및 해산	
제16조(폐교·해산의 절차 등)	제20조(해산·청산의 지원)
제17조(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제21조(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등)
제18조(재학생 및 교직원 보호)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19조(청산인 등)	
제6장 벌칙	
제23조(과태료)	제24조(벌칙)
□ 부칙(3개 조문)	
제1조(시행일)	제3조(청산법인의 지원에 관한 특례)
제2조(유효기간)	

2.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4조, 제5조)

제정안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전담기관 소속으로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제4조(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재정진단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2항에 따른 구조개선 이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4항에 따른 구조개선 명령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자율 개선의 권고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폐교 또는 해산의 인가에 관한 사항
7. 제21조에 따른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학의 총장·학장 또는 대학 경영에 10년 이상 관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회계사로서 회계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 분야의 행정 또는 연구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6. 고등교육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7.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상당하는 고등교육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제2항제6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안전과 관련된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상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음. 유사한 사례로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2)에 따른 사학정비심사위원회가 있으나, 이는 교육부 소관이 아닌

- 2) 「사립학교법」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으려는 학교법인은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 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시·도 교육감 소속이고, 그 심사 범위도 고등학교 이하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적인바, 보다 총괄적으로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대해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 사립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은 다른 유사법안과는 달리 위원 위촉이 국회의 추천을 받아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또한 교육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문성도 확보한다는 이점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구성원을 전부 국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지는 않음. 이를 고려했을 때, 국회 외에도 주무부처인 교육부, 사법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이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은 동 위원회를 전담기관에 두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에 따른 사립학교 구조조정 관련 대부분의 업무를 전담기관에서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교육부장관이 구조개선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동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안 제9조) 되어 있고, 학교법인이 신청

1.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의 지급

2.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⑤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 및 제4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감 소속으로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학교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한 경영위기대학 폐교나 학교법인 해산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인가도 동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바(안 제16조), 동 위원회를 전담기관에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교육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법률, 회계 등의 전문가도 필요한 바, 제2호(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와 제3호(공인 회계사로서 회계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를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도 위원으로 포함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임.

다만, 학생도 대학 구조개선에 따른 큰 영향을 받는 주요 이해관계 집단이므로, 동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제정안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 위촉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위원들이 전문성을 축적하여 관련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는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안 제16조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거나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에 귀속함을 전제로 해산장려금을 받으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제7호에 ‘제17조에 따

른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것을 제시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교육부장관의 구조개선명령, 폐교나 학교법인 해산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위원회의 성격이 구조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임을 고려할 때 위원회를 교육부 장관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이 중대한 것이므로 전담기관(공법인)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아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함이 바람직하며, 자진 폐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사항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고, 사립대학의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사학법인연합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사립대학 경영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로, 위원회의 구성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3. 사학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안 제6조)

제정안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지원 및 관리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6조(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 업무의 전담기관

(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의 지원
2. 제7조에 따른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의 지원
3. 제10조에 따른 구조개선 이행실적 점검의 지원
4. 제12조에 따른 경영자문의 제공 및 지원
5. 제19조에 따른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교대학에 대한 청산 지원
6. 그 밖에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임·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동 재단은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안 제7조),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안 제8조), 구조개선 이행계획 수립 및 제출요구(안 제9조), 구조개선 조치의 이행실적 보고(안 제10조), 자율 개선의 권고(안 제11조), 경영자문(안 제12조), 청산절차의 지원(안 제20조) 등 제정안에서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해 취하는 조치의 대부분을 수행하게 됨.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현재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 사업, 폐교대학 종합관리사업,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 등 이미 구조개선 및 경영효율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바, 전담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역량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임.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정안이 전담기관에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안 제8조), 구조개선조치의 이행 및 보고(안 제10조), 재정 개선의 권고(안 제11조) 등의 권한을 주고 있어(이상은 전담기관이 수행) 교육부 장관의 권한인 구조개선 명령(안 제9조) 및 시정명령(안 제10조) 외에도 처분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전담기관의 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바, 이에 대해 법체계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은 동 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비밀 누설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4. 재정진단의 실시(안 제7조)

제정안은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매년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립대학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7조(재정진단의 실시) ① 전담기관의 장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재정진단(이하 “재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그 이행 기간 동안 재정진단을 유예할 수 있
--

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 결과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의 세부기준,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그 사립대학의 재정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감안한 규정임. 다만, 재정진단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재정진단 이후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재정진단이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에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대략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교육부는 재정진단의 경우 사립대학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재정진단을 실시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재정진단 대상을 사립대학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경영위기대학 지정에 중요한 영향을 갖는 재정진단 실시 권한을 전담기관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교육부장관에 두고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재정진단을 매년 실시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 수 있어 2년 주기로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진단 외에 별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고,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임.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모든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재정진단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불필요하며, 3년 주기로 예외를 인정하면서 재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별도의 실태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5.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안 제8조)

제정안은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전담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8조(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구조개선이행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구조개선 명령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립대학에 대하여 경영위기대학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장은 제3항에 따

른 지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제2항에 따른 통지, 제3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학교법인에 대해 전담기관의 장은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수립·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며(안 제9조),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영자문을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고(안 제12조), 해당 대학 등은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잔여재산 귀속 등에 대해 특례를 인정받게 됨(안 제13조에서 제17조).

다만,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는 것은 그 대학이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지정 자체가 대학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음. 제정안은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지정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그러한 불복절차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제정안은 경영위기대학의 지정업무를 전담기관의 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정제도는 ① 기존 인허가나 특허로서의 지정, ② 행정업무의 부여를 위한 지정, ③ 지원·육성 대상의 선정을 위한 지정, ④ 규제 대상 선정을 위한 지정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여러 가지 성격이 혼합되어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음.³⁾ 경영

위기대학의 지정행위는 그 지정으로서 여러 특례를 인정받게 되는 한편, 구조개선 조치 등의 대상이 되는 바, ③,④의 성질을 복합적으로 가진 것으로 보임. 이때, ④ 규제 대상 선정을 위한 지정은 일종의 행정명령과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행정청이 아닌 전담기관의 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경영위기대학의 지정은 처분성이 있는바, 교육부장관의 권한으로 실시하는 것이 법체계적 측면에서 타당하고, 지정이 학교법인과 대학에 주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권한은 관할청(교육부)이 가져가야 하며, 경영위기대학 지정 시 혜택·지원도 있지만 의무가 수반되므로, 당사자에게 그 지정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6. 구조개선 조치 등(안 제9조, 제10조)

제정안은 경영위기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전담기관의 장이 보유자산의 활용·처분 등 재무구조의 개선, 학부·학과·사립대학

3)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https://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2225&astClsCd=>)

의 통·폐합, 사립대학의 폐교 또는 학교법인의 해산 등을 포함하는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제출을 요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 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해 점검 및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학생 모집 정지, 학교법인 폐지 등의 구조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9조(구조개선 조치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위험의 원인과 그 수준을 고려한 구조개선 조치를 위하여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구조개선 이행계획(이하 “구조개선이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유자산의 활용·처분, 재정기여자 유치 등 재무구조의 개선
2. 학부·학과의 통·폐합
3. 사립대학의 통·폐합
4. 사립대학의 폐교 또는 학교법인의 해산
5. 그 밖에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경영환경 및 교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구조개선이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개선이행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전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경영위기대학 중 재정위험수준이 한계에 임박하여 회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구조개선 명령(이하 “구조개선명령”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수 개의 사항을 동시에 명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 학생 모집의 정지

2. 사립대학의 폐교

3.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대학의 장, 학교법인에 대한 재산 출연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⑦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제출·변경 및 구조개선명령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구조개선 조치의 이행실적 보고 등) ①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른 구조개선 조치의 이행실적을 연간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이행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이행실적에 관한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그 구조개선 필요성이 크고, 제정안 제12조(경영자문), 제13조(적립금 사용의 특례), 제14조(재산 처분의 특례 등), 제15조(사립대학의 통·폐합 지원을 위한 특례), 제17조(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등 효율적인 구조개선을 위한 여러 특례조항을 적용받으며, 제20조(해산·청산의 지원),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등의 지원을 받게 됨. 이러한 지원 하에서의 효율적인 구조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담기관의 장이 경영위기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이행계획의 수립·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 보임.

한편 제정안 제9조제4항의 구조개선명령의 사립대학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 그 명령 사유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즉, 제정안의 구조개선명령은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시정명령을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경영위기대학의 회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으로서 위원회의 심의결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학교법인에 대해 발하는 명령으로서, 학생 모집의 정지, 사립대학의 폐교,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

등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에게 매우 불리한 처분이 가능함.

제정안 제9조제4항제1호의 “시정명령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요건은 그 기간을 6개월로 지정하고, 다른 예외사유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와 유사입법례로는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⁴⁾와 「사립학교법」 제47조(해산명령)⁵⁾가 있는데,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는 제정안과 달리 “기간을 정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해산명령은 시정을 지시한 후 6개월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구조개선명령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법의 예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여부를 구조개선명령의 판단기준으로 추가하는 부분도 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임.

이와 유사하게 제2호의 “시정명령을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 4)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5) 「**사립학교법**」 제47조(해산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관할청이 시정을 지시한 후 6개월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만 한다.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구조개선명령의 판단기준으로 추가하는 부분도 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구조개선 조치 권한은 처분성이 있는 법적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의 권한으로 실시하는 것이 법체계적 측면에서 타당하고, 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 시정조치 불이행만으로도 강력한 구조개선 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 삭제가 필요하며, 교육기관의 고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구조개선 조치의 이행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연간 2회 이상 보고는 학교법인과 대학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연 1회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시함.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에 사실상 특정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사학운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권유’ 등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하고, 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 시정조치 불이행만으로도 강력한 구조개선 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규제 입법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며, 제5항의 경우도 세법·장려금·해산 시 재산 처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구조개선 조치의 이행실적 보고

와 관련하여 연간 2회 이상 보고는 학교법인과 대학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연 1회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시함.

7. 자율 개선 및 경영자문(안 제11조, 제12조)

제정안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위기대학지정을 받지 아니한 대학이나 법인이 재정상태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개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조치를 받은 법인에게 전담기관에 의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경영위기가 예상되는 대학에 대한 자율개선권고와 자문기관지원은 사학 스스로 문제점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또한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당 학교법인에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의한 경영자문을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안 제12조는 전담기관의 장이 제9조에 따른 구조개선이행계획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전담기관에 의한 경영자문을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11조(자율 개선의 권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사립대학이나 학교법인에 대하여 재정진단 결과 재정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에 자율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율 개선 조치를 권고받은 사립대학 또는 학교법인

은 제12조에 따라 전담기관의 경영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12조(경영자문) ① 전담기관의 장은 구조개선이행계획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전담기관에 의한 경영자문을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자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영자문의 절차,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제정안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전담기관의 자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한 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로 인하여 경영자문이 사실상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개입으로 비취질 우려도 있으나, 해당 의무규정이 사립대학 재정위기라는 급박한 위기 속에서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한다는 본 제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임.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전담기관 자문이 개별 대학의 재정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인지 장담하기 어려우므로, ‘충실히 반영하여’라는 말은 법 규정 체계상 맞지 않으며, 자문 결과의 반영 여부는 자발적인 것에 맡겨야 하므로 ‘변경

하여야 한다'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8. 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특례 (안 제13조부터 제15조, 제17조)

제정안은 경영위기대학의 적립금 사용(제13조), 재산 처분(제14조), 학교 설립 기준(제15조), 폐교·해산(제16조), 잔여재산 귀속(제17조)에 대한 각종 특례를 두고 있음.

제13조(적립금 사용의 특례)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을 구조개선 이행계획 수행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재산 처분의 특례 등) ①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대학의 재산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대학이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산 처분 및 사업양도(일부 양도로 한정한다)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임시이사회가 제2항에 따라 재산 처분을 결정할 때에는 학교법인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 직전 정식 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5조(사립대학의 통·폐합 지원을 위한 특례)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사립대학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설립기준

과 시설·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및 정원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① 제16조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사립학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한 출연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청산 지원계정으로의 귀속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잔여재산이 귀속된 경우,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補填)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산장려금의 범위, 한도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해산장려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헌법 제23조에 의해 보장된 재산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여

러 제한⁶⁾을 두고 있음. 제정안은 그러한 제한에 대한 특례를 둠으로써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에 대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적립금 사용의 특례)는 교육시설의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改修)·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되던 적립금⁷⁾을 그 외에 구조개선 이행계획 수행 목적으로도 사용하게 하려는 것임.

6) 「**사립학교법**」 제5조(자산)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改修)·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 및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구성한다.

③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1.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④ ~ ⑦ (생략)

제34조(해산 사유)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목적 달성의 불가능

3.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4. 파산

5. 제4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해산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학교법인이 정관에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殘餘財産)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경우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7)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改修)·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안 제14조(재산 처분의 특례 등)는 기존에 매도나 담보 제공이 불가능했던 교지, 교사, 체육장 등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임시이사 법인에서 재산처분 및 사업일부양도 결정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사립대학의 통·폐합 지원을 위한 특례)는 통·폐합 추진 시 통·폐합 후 교사·교원(의학계열의 교원은 제외한다)·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을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통·폐합 후의 대학과 동일한 종류의 학교를 기준으로 한 확보율을 말하며,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00퍼센트로 본다)의 확보율 이상으로 새로운 편제완성연도까지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임.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으로 출연가능하게 학교법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임.(공익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의 잔여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⁸⁾⁹⁾됨.)

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8)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

9)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남은 재산의 처리) ①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의 규정 및 원칙	주요 특례 규정
○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 원칙 : 적립금은 재난 학생 지원, 일정 한도 내의 벤처기업 투자 등을 제외하고는 <u>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u>	○ 안 제13조(적립금 사용의 특례) - 특례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적립금을 구조개선 이행 계획 수행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u>
①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제28조제2항 - 원칙 : 교지, 교사, 체육장 등 학교교육에 <u>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불가</u>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교사), 제5조(교지)에 따라 <u>교사·교지 기준 면적을 확보해야</u> 하며, 동 규정 제7조(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연간 <u>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확보해야 함</u> ② 임시이사 권한 관련 대법원 판례 - 임시이사는 그 지위의 <u>한시적·임시적 특성으로 그 권한에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 시의 정식이사 선임과 같이 학교법인의 일반적인 운영을 넘어서는 사항은 임시이사의 권한 밖의 일이라 할 것이다.</u>(대법원 2007.5.17. 선고 2006다19054)	○ 안 제14조(재산처분의 특례) - 특례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사립대학의 재산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적용 가능</u> ② <u>임시이사 법인에서 재산처분·사업 일부양도 결정 가능</u>

기존의 규정 및 원칙	주요 특례 규정
○ 「대학 설립·운영 규정」제2조의4 - 원칙 : 통·폐합을 하려는 대학은 통·폐합 후 대학의 편제완성연도 학생정원이 통·폐합 전의 대학, 전공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의 편제완성연도 학생정원의 합을 초과하지 않고,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을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 이상으로 새로운 편제완성연도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통·폐합에 따른 학생·교직원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안 제15조(사립대학의 통·폐합 지원에 관한 특례) - 특례 : 통폐합 추진 시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u>학교의 설립 기준, 시설·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및 정원 등의 기준을 달리</u> 정할 수 있음
○ 「사립학교법」 제35조 - 원칙 :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자는 <u>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u> 중에 선정	○ 안 제17조(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 특례 : 경영위기대학의 학교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일부를 <u>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으로 출연하거나 사학진흥기금에 귀속시키고 해산장려금 수령 가능</u>

※ 구체적 조항은 참고자료 1. 경영위기 대학에 대한 특례 관련 기존의 법령 참고

교육부는 안 제13조 적립금 사용의 특례와 관련하여 이는 경영위기 대학 재산권 행사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교육부령보다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대학이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받은 경우 임시이사가 재산 처분 및 사업 일부 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법인의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대법원 판례도 임시이사의 권

한은 민법상 임시이사와는 달리 제한적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입법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행령 등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제14조제1항 내용 중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 모호하고,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도나 담보’를 허용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며, 학교법인이 임용하지 않은 임시이사가 재산 처분 및 사업의 일부 양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학교법인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적이므로 제2항, 제3항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8-1.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안 제17조)

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특례 중 잔여재산귀속 특례는 학교 구조개선에서 학교법인에게 중요한 출연재산 귀속문제에 대해 기존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학교법인이 학교 구조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특히 제정안은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시키는 경영위기대학의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사립학교법 제35조의2¹⁰⁾는 2006년 12월

10) 「사립학교법」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으려는 학교법인은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 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1일까지¹¹⁾ 고등학교 이하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었으며,¹²⁾ 지난 2020년 12월 4일에 부칙으로 규정된 적용기한을 삭제하여 고등학교 이하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자발적 해산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143호, 광상도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바 있음.

제정안은 해산장려금을 귀속재산의 일부로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해산장려금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 학교재산이 사유재산인지, 공적재산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던 것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의 “「사립학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로 인해 「사립학교법」 제35조제3항¹³⁾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비리를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의 지급

2.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⑤ ~ ⑦ (생략)

11) 「사립학교법」 부칙 <법률 제5345호, 1997. 8. 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학교법인의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2) 97.8.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었고, 동 특례규정이 '06.12.까지 2회 연장되어 34개 법인 해산

13) 「사립학교법」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학교법인이 정관에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殘餘財産)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경우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게 청산종결을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

저지른 사학재단 설립자가 해산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문제를 안 제17조제2항 단서14)를 통해 해결하였음.

마지막으로 제정안은 해산장려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¹⁵⁾으로 보고 있음. 이에 따르면 해산장려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더 많은 장려금이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돌아가게 됨.

이러한 해산장려금의 지급은 학교법인의 해산 등 개선조치를 적극적으

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補填)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되는 경우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해산한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또는 이들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인 사람이 학교법인 해산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기간 중 정관으로 지정한 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직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가. 대표자
 - 나. 임원
 -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총장 또는 부총장
 - 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장 또는 교감
 - 마.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또는 원감
 2. 정관으로 지정한 자의 임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이하 “청산지원계정”이라 한다)에 귀속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양여·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그 밖의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된 재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해당 시·도 교육감이 관리하되, 제5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시·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 14) 제17조(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잔여재산이 귀속된 경우,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補填)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로 이끌어내는 인센티브라는 점은 명확해 보임.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 재산의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매도 등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¹⁶⁾, 헌법재판소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공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립대학의 재정위기와 학생의 교육권 보장 등 공공의 가치와의 비교형량을 통한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해산장려금 용어는 학교법인 해산을 부추긴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해산정리금으로 용어 변경이 필요하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도 고용승계 조건으로 타 학교법인에 재산을 귀속하여 청산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16에 따른 해산으로 인해 폐교되는 사립대학의 교직원 2분의 1 이상을 고용하는 타 학교법인으로의 귀속도 추가할 것을 제시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제정안은 제16조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에게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으로의 퇴로 외에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평생교육시설, 교육연수시설, 장학재단 등 다양한 퇴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고, 학교법인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전환 또는 매각 시 조세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제시함.

한국전공대학협의회, 백석대학교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교직

16)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원 실직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폐지 대학 교직원을 고용하는 다른 학교법인에게도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의 구조개선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잔여재산의 귀속 범위를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외에 장학재단, 교육연수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세분화가 필요하고, 폐지 대학 교직원을 승계 임용하는 다른 학교법인에도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며, 동시에 원활한 학교법인의 해산을 위하여 잔여재산 처분계획서가 정한 자에게 귀속재산의 100분의 30 이내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9. 폐교·해산의 절차(안 제16조)

개정안은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른 폐교와 자진 폐교(폐지) 및 해산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16조(폐교·해산의 절차 등) ①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학을 폐교하거나 학교법인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폐교 또는 해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구조개선 이행계획 중인 대학
2. 구조개선 명령에 따라 경영 위기 대학

3. 구성원(재적학생 포함)의 3분의 2 이상이 폐교를 동의한 대학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점검하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의 의견 수렴 여부
 2. 폐교 또는 해산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대책
 3. 재정상황 및 재산 처리 계획
 4.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여부
 5. 그 밖에 폐교 또는 해산 인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 및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의한 감사 결과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또는 교육 관계 법령 위반으로 학교법인의 재정적 보전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취하거나 조건을 부과하여 인가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한 학교법인은 자진해산 신청 사실 등 폐교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해당 경영위기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기존의 폐교 및 학교법인의 해산은 「고등교육법」 제4조17) 및 「사립학교법」 제34조18)에 의해서만 가능했었음. 개정안은 원활한 구

17)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8) 「사립학교법」 제34조(해산 사유)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조개선을 위하여 기존 규정 외에도 폐교 및 해산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절차를 규정한 것임.

제정안은 구조개선 이행계획 중이나 구조개선명령에 따라 폐교해야 하는 경영위기대학 외에도 구성원(재적학생 포함)의 3분의 2 이상이 폐교를 동의한 대학도 폐교 또는 해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학의 폐교나 학교법인의 해산에 있어 구조개선 이행계획, 구조개선 명령을 통하지 않은 민주적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학교의 경영 위기가 학교법인의 귀책이 아니라 사회적, 정책적 환경에서 비롯되는 경우 소유권·경영권 상실 책임을 재산출연자 등 학교법인이 지는 것은 가혹하므로 특별한 보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0. 재학생 및 교직원 보호(안 제18조)

제정안은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폐교되는 사립대학의 학생에 대한 국가의 학습권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편입학 시 그 대상학교의 별

-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목적 달성의 불가능
 3.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
 4. 파산
 5. 제4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
-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해산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정원을 보장하며, 편입학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자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장하며, 교직원에 대해 잔여재산의 범위 내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제18조(재학생 및 교직원 보호)** ① 국가는 구조개선이행계획 또는 구조개선명령에 따라 폐교되는 대학(이하 “폐교대학”이라 한다)에 소속된 재학생의 편입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폐교대학은 소속된 재학생이 폐교 이후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범위 내에서 학업중단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폐교대학 소속 학생의 편입학을 받은 학교에 대하여는 해당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그 정원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대학의 교원 또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개선이행계획 또는 구조개선명령에 따라 면직된 교원 또는 직원(이하 “면직 교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⑤ 학교법인은 면직 교직원에 대하여 잔여재산 범위 내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국가는 폐교대학에 소속되었던 연구자가 「학술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의한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 참여에 대하여 차별·제한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구조개선이행계획 또는 구조개선명령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교대학의 학적부·조직·회계·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48조의2를 준용한다.

「사립학교법」 제48조의2¹⁹⁾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제15호²⁰⁾에서 폐교되는 학교의 학생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규정되어 있으나, 법률로 폐교되는 학교의 학생의 학습권을 명시·보호하고 있는 법은 없어 동 조항과 같이 폐교되는 사립대학 소속 학생의 학습권 보호 의무를 규정하여 학습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여러 법령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하나의 법률에 정리하는 것은 폐교되는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의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는 현재 교육부·사학진흥재단은 폐교대학 소속 재학생의 편입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 중이므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의

19) 「사립학교법」 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①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는 학적부, 조직·회계·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2.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 폐지의 인가를 받은 학교
3.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 폐쇄의 명령을 받은 학교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과 간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8호·제9호·제11호·제12호·제12호의2·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1. ~ 14. (생략)

15.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 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 폐쇄로 인하여 다른 학교의 동일한 모집단위 또는 유사한 모집단위로 편입학하는 자

16.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과의 폐지에 따라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가 폐지되어 다른 학교의 동일한 모집단위로 편입학하는 자

- ③ ~ ⑦ (생략)

무 조항을 별도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낮다는 입장임.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학교법인에 일차적 책임이 없다면 잔여재산 일부는 설립자 측 또는 학교법인에 우선적 보전 조치가 필요한바,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의 지급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경영위기 원인에 따라 그 처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임.

11. 청산인 등(안 제19조)

제정안은 학교법인이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해산한 경우 전담기관의 임·직원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개선명령에 의해 해산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임·직원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며, 학교법인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전담기관을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19조(청산인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민법」 제82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임·직원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구조개선명령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임·직원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 및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을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전담기관을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해산한 경우 「민법」 제82조²¹⁾에 의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²²⁾에 따라 법원이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²³⁾에 의해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함.

그러나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재정여건 등 청산 업무 수행 환경이 열악하여 청산인 지정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경우 현행법상으로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

21) 「민법」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관리인의 선임) ①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가. 개인인 채무자

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다. 채무자의 지배인

2.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

③ ~ ⑦ (생략)

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①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②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²⁴⁾,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신청하는 등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 등이 있음. 이는 회생 절차 개시 또는 파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전문성 있는 전담기관으로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청산 등의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제정안은 제9조제5항제3호에 따른 구조개선 명령에 의해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19개교 중 청산을 완료한 법인이 1개뿐인 현실을 고려할 때, 원활하고 신속한 청산절차 이행을 위한 것으로 보임. 유사한 입법례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²⁵⁾는 부보금융회사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

24) 「학교법인의 청산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제정 2018. 6. 28. [상업등기선례 제201806-1호, 시행]

25)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파산절차의 특례) ① 법원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 등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부보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회사를 포함한다)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531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및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한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상법」 제539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제492조·제49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는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달리 ‘이사’를 청산인으로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려워 학교법인 이사가 청산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전담 기관 임직원이 청산인 업무에 더 전문성과 능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

12.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등(안 제21조)

제정안은 구조개선이행계획 또는 구조개선명령에 따른 폐교로 인해 지역경제 여건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교대학의 소재 지역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고, 그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21조(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구조개선이행계획 또는 구조개선명령에 따른 폐교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교대학의 소재 지역을 특별지원지역(이하 “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융자 등 금융·재정 지원
2.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3. 지역 근로자의 교육훈련 등 고용안정 지원
4. 그 밖에 지역경제 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③ 그 밖에 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학, 대학원은 그 자체로 소재지역에 유·무형의 영향을 미침. 경제적으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고용함으로써 일자리가 늘어나고, 대학 학생들이 유입됨으로써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는 등의 효과가 있으며, 최근 대학의 기능으로 강조되는 산학협력이나 평생교육 등도 지역 기업 및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이를 고려했을 때 지역 대학의 폐교는 그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및 지역경제 침체 등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은 폐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필요한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근로자에 대해 타 법률에서 위기 발생, 재정 악화 시에 개별적으로 지원 중²⁶⁾이므로 별도의 지역을 지정해서 지원을 추가할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임.

26) (금융·재정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은 재도약지원자금(2023년 4,030억원),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융자(2023년 3조원) 등으로 지원 가능
(자문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문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2023~24년 558억원) 및 재도약 촉진 사업 등으로 지원 가능
(고용안정 지원) 고용위기 등 발생 시 지자체 신청에 따라 근로자 교육훈련 등 고용안정 지원 가능(2023년 지역교육촉진지원금 46억원)

13. 과태료(안 제23조)

제정안은 구조개선이행계획 또는 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이행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제정안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구조개선이행계획 또는 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폐교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24조(벌칙) 제9조에 따른 구조개선명령에 불응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제정안에 따른 구조개선 조치 등에 대해 대상 대학이나 학교법인 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규정임.

다만, 「사립학교법」 제74조²⁷⁾는 일부 사유에 대해 “특별한 사유

27) 「사립학교법」 제74조(과태료) ① 사립학교 교원 또는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없이”라는 단서를 달아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경우도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을 제출, 보고함에 있어 과실에 의한 위반도 있을 수 있는 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출(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보고)한 경우’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구조개선 이행계획 제출 여부는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부분’은 삭제하고, 이행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이행실적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1. 제54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54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6조의2제5항 전단(제70조의6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70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70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7. 제7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제72조의5제4항제2호에 따른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② ~ ⑤ (생략)

문 의 처
02)6788-5188

※ 참고자료

1. 경영위기 대학에 대한 특례 관련 기존의 법령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改修)·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 및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구성한다.

③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1.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 ④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⑤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적립금 투자 대상이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교육부장관은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적립 규모, 적립 기간 및 투자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⑦ 제1항 단서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과 제5항에 따른 투자결과 의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자산)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

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학교법인이 정관에 해산에 따른 잔여 재산(殘餘財産)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경우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게 청산종결을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補填)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되는 경우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해산한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또는 이들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인 사람이 학교법인 해산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기간 중 정관으로 지정한 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직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가. 대표자

나. 임원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총장 또는 부총장

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장 또는 교감

마.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또는 원감

2. 정관으로 지정한 자의 임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이하 “청산지원계정”이라 한다)에 귀속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양여·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그 밖의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된 재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해당 시·도 교육감이 관리하되, 제5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시·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4(대학의 통·폐합) ①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통·폐합을 할 수 있다.

1. 대학 간의 통·폐합
2. 대학과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간의 통·폐합
3. 대학과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이하 “사이버대학”이라 한다) 간의 통·폐합. 이 경우 대학과 사이버대학은 통·폐합 전과 통·폐합 후 모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폐합을 하려는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획을 마련하여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 통·폐합 후 대학의 편제완성연도 학생정원이 통·폐합 전의 대학, 전공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의 편제완성연도 학생정원의 합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통·폐합 후 교사, 교원(의학계열의 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을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통·폐합 후의 대학과 동일한 종류의 학교를 기준으로 한 확보율을 말하며,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00퍼센트로 본다) 이상으로 새로운 편제완성연도까지 유지할 것

3. 통·폐합에 따른 학생·교직원 보호 대책을 수립할 것

③ 그 밖에 대학의 통·폐합의 절차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